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3. 9. 14(목) 10:00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77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2. 제안이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폐지(현행 제2조의2 삭제)
- 나.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3조제5호, 제4조제1호 및 제3호, 현행 제10조제2항 삭제)
- 다.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수정(안 제10조제1항)
- 라. 관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
 - 2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
 - 3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」 제4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나. 주요 내용

1)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폐지(현행 제2조의2 삭제)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(2019. 1.15)에 따라 임의규정인 자활기금 자활기금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조문을 삭제함

- 자활기금은 대부분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근로를 통한 수입금 등의 일부를 공제형식으로 적립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기여자와 수혜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짐.

따라서 자활기금의 취지에 따라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 등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, 그 재원은 자활사업에만 쓰이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금 설치 근거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함

2)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3조제5호, 제4조제1호 및 제3호, 현행 제10조제2항 삭제)

3)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수정(안 제10조제1항)

4) 관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14조)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」 ” 을 “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” 으로 변경함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으로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, 관련 조항 등의 조문을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제18조의6(고용촉진)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2. 1., 2014. 12. 30.>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. <신설 2011. 6. 7., 2014. 12. 30., 2021. 12. 21.>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·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1. 6. 7., 2014. 12. 30.>

[본조신설 2006. 12. 28.]

[제목개정 2014. 12. 30.]

[제18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10으로 이동 <2021. 7. 27.>]

제18조의7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. <개정 2019. 1. 15.>

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·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. <개정 2019. 1. 15.>

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. 2. 1.]

[제18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1로 이동 <2021. 7. 27.>]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